

구 분	규격	전체		금회 공사완료구간		이주자택지구간	
		연장(m)	면적(m ²)	연장(m)	면적(m ²)	연장(m)	면적(m ²)
유수지	3개소	-	26,751.1	-	26,751.1	-	-
하수도 (우수관로)	D250~D1200	44,381	-	41,304	-	3,077	-
하수도 (우수압거)	1.5x1.8~3.5x2.5	7,589	-	7,554	-	35	-
하수도 (오수관로)	D150~D600	25,955	-	23,789	-	2,166	-
상수도 (상수관로)	D25~D800	40,923	-	38,353	-	2,570	-

주1)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사항

- ① 하천 중복결정 : 도로(4,289m²), 녹지(250.6m²)
- ② 교통광장 중복결정 : 도로(864.0m²)
- ③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 중복결정 : 유수지(26,751.1m²)

주2) ()는 중복결정된 구간을 제외한 면적임

주3) 상기시설은 기타 부속시설물을 포함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8-1681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2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- 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지케이기술연구소(김인중) ② 대림산업(주)(박상신)
③ 두산건설(주)(이병화) ④ (주)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(신희정)

나. 전화번호 : ① 031-555-2263 ② 02-369-4218 ③ 02-510-3272 ④ 02-6211-7885

2. 명칭 : SIS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한 고성능 불투수성 아스팔트 포장공법(GMA 불투수 아스팔트)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도로 / 교면포장

<기술의 요지>

본 신청기술은 아스팔트 바인더를 아스팔트, 고분자계 SIS(Styrene-Isoprene-Styrene) 수지, SBS(Styrene-Butadiene-Styrene) 수지, 석유수지 외 fiber 등을 첨가하여, 부순모래와 채움재 함량을 증진시켜 공용성 등급을 개선(PG 82-34 상회)하였고, 방수층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 공법과 동일한 장비로 텍코팅 작업만으로 포장면의 불투수 효과를 만족시키는 경제적인 교면용 불투수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및 포장공법이다

<범위>

아스팔트 바인더의 구성에 있어 중량비 아스팔트 60~80 %, 고분자계 SIS 수지 5~25 %, SBS 수지 5~7 %, 석유수지 5~20% 외 fiber 등을 첨가하고, 부순모래와 채움재 함량을 증진시켜 공용성 등급을 개선(PG 82-34 상회)하며, 방수층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텍코팅 작업만으로 불투수 효과를 만족시키는 교면포장 공법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해양수산부공고제2018-1082호

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14일

해양수산부장관

1. 법인의 명칭 : 한국토니지48호 선박투자회사
2. 법인의 대표자 : 장성수
3. 본점의 소재지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
4. 설립 자본금 : 금 15,000원
5. 설립목적 :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
6. 선박투자업 인가일 : 2018년 12월 7일(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)

●해양수산부공고제2018-1083호

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14일

해양수산부장관

1. 법인의 명칭 : 한국토니지49호 선박투자회사
2. 법인의 대표자 : 장성수
3. 본점의 소재지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(이도이동)
4. 설립 자본금 : 금 15,000원